

[별표 6]

## **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(제21조 관련)**

### 1.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

$$\text{인증 수수료} = \text{직접인건비} + \text{제경비} + \text{기술료} + \text{직접경비}$$

가.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.

나. 제경비는 최대 (직접인건비×120%) 로 산정한다.

다. 기술료는 최대 {(직접인건비+제경비)×40%} 로 산정한다.

라.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. 단, 신청인은 심사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경비를 인증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 2. 인증심사원 보수 및 출장비 지급기준

가.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 및 경비는 인터넷진흥원이 정하여 공고한다.

나. 인증심사원이 국내·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사 수행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정액여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.